

결 정

의 결 번 호 제21대 대선-자심21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대표이사 홍성일

심의대상기사 [별지1] 기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전라매일 11면에 [별지2]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가 게재된 지면인 2025년 4월 29일자 11면의 사설 「청년 이탈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기울여야」의 제목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6.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별지1] 심의대상기사

1. 전라매일 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제하의 칼럼
2. 전라매일 2025년 4월 30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제하의 칼럼
3. 전라매일 2025년 5월 1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제하의 칼럼
4. 전라매일 2025년 5월 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제하의 칼럼
5. 전라매일 2025년 5월 13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제하의 칼럼
6. 전라매일 2025년 5월 16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제하의 칼럼
7. 전라매일 2025년 5월 22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제하의 칼럼

[별지2] 경고결정문

1.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하여(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등 7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결 정

의 결 번 호 제21대 대선-자심22

언 론 사 주식회사 이투데이(이투데이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대표이사 김상우

심의대상기사 [별지] 기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안내문 송부**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인공지능(생성형 AI)을 활용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어휘와 표현, 몸짓과 표정, 복장, 연설 방식, 무대 구성, 발언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 보도를 연속적으로 게재하였다.

심의대상기사는 주목도 높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공약 외에도 후보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독창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기사에서 다룬 요소들은 평가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석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면서 해당 평가에 사용된 구체적인 지표, 기준, 질문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의대상기사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였거나, 그로 인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본 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거보도는 경미한 내용이라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노력과 책임이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론 보도 기법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갖춘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기로 한다.

2025. 5. 26.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별지] 심의대상기사

1.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25일자 6면 「불리한 질문에… 말흐리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제하의 기사
2.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16일자 4면 「李 ‘안정적 리더’ … 金 ‘기득권 탈피’ … 李 ‘젊은 전문가」
제하의 기사
3.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20일자 6면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제하의 기사
4.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23일자 6면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과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제하의 기사

결 정

의 결 번 호 제21대 대선-자심23

언 론 사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164호
대표이사 김광탁

심의대상기사 [별지1] 기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외뉴스통신 홈페이지(<https://www.nbnnews.co.kr>) 정치-정치일반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2] 경고결정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결정 알림)**을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경고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6.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별지1] 심의대상기사

1. 내외뉴스통신 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하의 기사
2.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문] [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제하의 기사
3.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제하의 기사
4.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3일자 정치면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제하의 기사
5.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4일자 정치면 「[성명서]“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끕니다!» 제하의 기사
6.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제하의 칼럼
7.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전문][김문수의 눈물]」 제하의 기사
8.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정치면 「[전문] [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하의 기사

[별지2]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 본 뉴스통신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 자료를 그대로 게재(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등 7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결 정

- 의 결 번 호 제21대 대선-자심24
-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45
대표이사 정진욱
- 심의대상기사 1.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13일자 11면 「김문수를 評한다」 제하의 기고
2.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1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제하의 기고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6.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결 정

- 의 결 번 호 제21대 대선-자심25
- 언 론 사 주식회사 자유일보(자유일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3~304호
대표이사 전한나
- 심의대상기사 자유일보 2025년 5월 16일자 14면 만평 「3권장악...」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변형 및 재구성한 만평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6.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선거기사가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결 정

- 의 결 번 호 제21대 대선-자심26
-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45
대표이사 정진욱
- 심의대상기사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제하의 기사
-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경북산업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경북연합일보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심의대상기사가 게재된 지면인 2025년 5월 21일자 1면의 기사 「**李·金 개헌 카드 ‘헛바퀴’…임기단축 합의 없을 듯**」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리더십, 외교 및 안보역량, 경제 성장 기여 등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6.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별지]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 (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